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철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성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증가하여 지하수위 변동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지반침하
사고 사례를 통해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개발 과정에서의 지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